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9(목) 평창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 2015. 11. 20(금)
- 상정일자 : 2016. 02. 01(월) 제21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재무과장 정성문)

-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용섭)

- 본 조례안은 평창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 안 제3조에서는 공용차량을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차량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 사항을
- 안 제7조는 공용차량 이용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 검토 결과

그 동안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익활동을 위한 공용차량지원 요청 시 혼란과 제약이
발생되었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공용차량의 지원범위와 절차, 이용자의 의무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 지원 및 배차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예술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평창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

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군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행선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한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서식]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

신청인	기관·단체명		대표자	
	사무실 주소		연락처	
행사내용	행사명			
	사용목적 및 주요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행사주관			
	행사기간			
	사용기간			
	행선지 및 경유지			
	탑승인원	명		
<p>평창군 공용차량에 대하여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p> <p>20 . . .</p> <p>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p> <p>평창군수 귀하</p>				
첨부서류				